

1. 방송사업자 분담금 산정 체계

1-1. 최종 징수율 산정

< 기본 징수율 >

광고매출액 구간별 최소 기본징수율값 (0.0, 1.0, 2.0, 3.0, 4.0, 5.0)	+	$\frac{\text{사업자별 광고매출액} - \text{광고매출액 구간 시작값}}{\text{광고매출액 구간 상한값} - \text{시작값}}$	× 조정계수
--	---	--	--------

※ 조정계수
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1
 지역·중소지상파 : 0.931

※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50%을 초과하는 경우, 150%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 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함

×

< 징수율 추가 감경 >

- KBS·EBS(공공성) : 1/3 감경
- 지역·중소지상파 :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라 감경
- 종편·보도채널 : 11.67% 감경
-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당기순손실 발생 시 손실에 따라 추가 감경



최종 징수율 결정

1-2. 분담금 징수금액 결정

< 분담금 산출 >

방송광고 매출액 × 최종 징수율



< 면제 및 경감 >

구분	관련규정	내용
면제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	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며,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
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
경감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분담금 경감



사업자별 최종 징수금액 결정

2.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산정 내역 등의 공개

(단위 : %, 원)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	
1	(주)문화방송	중앙지상파	4.1956%	-	4.1956%	-	-	11,457,972,180	
2	(주)에스비에스	중앙지상파	4.3001%	-	4.3001%	-	-	15,915,941,560	
3	한국방송공사	중앙지상파	4.182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1호에 따른 1/3 감경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0.3219% 감경	2.4664%	-	-	6,516,822,340	
4	한국교육방송공사	중앙지상파	2.390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1호에 따른 1/3 감경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1.1953% 감경	0.3984%	-	-	102,080,310	
5	OBS경인TV	지역민방	2.0436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2호 가목에 따른 4/12 감경	1.3624%	207,299,602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경	35,206,350	
6	와이티엔라디오	라디오	0.3031%		0.2020%	1,983,093		1,305,430	
7	(재)불교방송	라디오	0.6254%		0.4169%	-		-	14,004,590
8	(재)극동방송	라디오	0.2616%		0.1744%	-		-	2,450,620
9	(재)원음방송	라디오	0.2952%		0.1968%	-		-	3,119,980
10	(재)CBS	라디오	2.1267%		1.4178%	-		-	303,050,330
11	(주)와이티엔디엠비	DMB	0.1992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2호 나목에 따른 5/12 감경	0.1162%	770,484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경	473,060	
12	대구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8066%		1.0539%	-		-	102,250,330
13	광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6574%		0.9668%	-		-	86,056,320
14	전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2929%		0.7542%	-		-	52,365,050
15	울산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2193%		0.7113%	-		-	46,579,330
16	목포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9125%		0.5323%	-		-	26,082,940
17	여수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957%		0.5225%	-		-	25,132,220
18	(주)엠비씨강원영동	지역MBC	1.7097%		0.9973%	-		-	91,573,510
19	(주)케이엔엔	지역민방	2.0719%		1.2086%	-		-	229,887,580
20	(주)티비씨	지역민방	1.9614%		1.1441%	-		-	163,255,840
21	(주)대전방송	지역민방	1.8767%		1.0948%	-		-	116,399,640
22	(주)전주방송	지역민방	1.2105%		0.7061%	-		-	45,906,010
23	(주)청주방송	지역민방	1.3724%		0.8006%	-		-	59,004,970
24	(주)G1	지역민방	1.8435%		1.0753%	-		-	106,463,830
25	(주)경인방송	라디오	0.2194%		0.1280%	-		-	1,508,420
26	원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658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2호 다목에 따른 6/12 감경	0.4329%	20,129,968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	0	
27	안동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282%	0.4141%	18,419,161	0			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28	(재)가톨릭평화방송	라디오	0.5770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2호 다목에 따른 6/12 감경	0.2885%	8,941,102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	0
29	부산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50%		0.0075%	6,062		0
30	부산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9014%		0.9507%	-	-	111,159,450
31	대전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7220%		0.8610%	-	-	79,628,000
32	(주)엠비씨경남	지역MBC	1.9055%		0.9527%	-	-	113,068,200
33	춘천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9312%		0.4656%	-	-	23,284,180
34	제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1316%		0.5658%	-	-	34,387,960
35	(주)광주방송	지역민방	1.9184%		0.9592%	-	-	119,148,480
36	주식회사 제주방송	지역민방	1.1636%		0.5818%	-	-	36,357,540
37	(재)서울 교통방송	라디오	0.0739%	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2호 라목에 따른 8/12 감경	0.0246%	97,701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
38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70%	0.0057%		5,148	0	
39	한국디엠비(주)	DMB	0.0366%	0.0122%		31,691	0	
40	(주)엠비씨충북	지역MBC	1.8811%	0.6270%		9,429,482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경	58,405,770
41	포항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2284%	0.4095%		-	-	27,014,430
42	(주)울산방송	지역민방	1.2228%	0.4076%		-	-	26,768,470
43	(주)제이티비씨	종합편성	4.0568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제3호에 따른 11.67% 감경		3.5834%	4,884,577,256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경
44	(주)채널에이	종합편성	3.4840%		3.0774%	578,449,205	1,704,917,580	
45	(주)연합뉴스티브이	보도전문	2.9547%		2.6099%	174,492,766	1,083,123,790	
46	(주)매일방송	종합편성	3.4699%		3.0650%		2,252,623,960	
47	(주)조선방송	종합편성	4.0088%		3.5410%		3,821,121,500	
48	(주)와이티엔	보도전문	3.2628%		2.8820%		1,819,705,460	

※ 기본징수율 및 최종징수율은 소수점 네자리로 표기

3. 근거법령

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, 분할 납부 및 가산금)

-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 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-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1억원을 말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,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20. 8. 4.>
[제목개정 2020. 8. 4.]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-14호) 제5조(최종징수율의 산정)

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,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.

1. 「방송법」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.

2.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.
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
 - 나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
 - 다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
 - 라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
3.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 행태,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.67%를 감경한다.
4.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.
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
 - 나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(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× 5)를 추가 감경
 "예시"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(100분의1 × 5)를 추가 감경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-14호) 제8조(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)

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, 징수율 감경사유,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